

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 
민간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47
------	-----

2014. 12. 4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년 10월 30일

나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05일

라. 상정일자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】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14년 12월 4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  
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류경기 기획조정실장)

-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운영체계를 종합적·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제도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 할 수 있

는 사무로서,

- 수탁기관 및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Ⅲ . 주 요 내 용

#### 가. 사업 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
- 평가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(종합성과평가)
- 평가대상 : 연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
  -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
- 평가주기 : 위탁기간 내 1회

#### 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협약체결일로부터 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업무
  - 수탁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한 평가지표 마련
  - 사무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
  -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무별 현장 실사 실시

- 사무별 사용자 만족도 실시(전화, 현장방문 등)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 등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종합성과평가 필요함
- 우리시 민간위탁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탁사무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 평가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함

## I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)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.
- 이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('14.5.14)하여 '종합성과평가'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(시행일 '15.1.1)을 마련한 바 있음. (※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개정조례임)

####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18조(종합성과평가)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적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(개정일 2014.5.14, 시행일 2015.1.1.)

- 이에 따라,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총 356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별도의 평가체계가 없는 120건의 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성과를 종합적·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평가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## 나.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현황

- 민간위탁 사무는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무임.
-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 행정의 복잡·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모두 356건(약 1조 70억원 규모)으로 이 중, 5억원 이상 사무가 255건이며, 법령·조례에 따른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의 수는 120개에 이르고 있음.

### 〈 민간위탁사무 평가대상 사무의 수 〉

구 분	사무수	평가방법	비고
총 위탁사무	356개		
5억원 이상	255개		
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	135개	법령 및 조례에 따른 평가 (관계부처 및 개별부서)	사회복지시설(77) 청소년시설(38) 노인전문요양원(7) 등
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	120개	종합성과평가 (조직담당관)	인생이모작지원센터, 동북부창업센터 등
5억원 미만	101개	성과 점검 결과 활용 (개별부서)	윤극영가옥 운영, 한강야생탐험센터 운영 등

※ 성과점검 : 연간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를 지도점검 시 점검

- 대상 및 주기 : 모든 사무, 연 1회 이상
- 점검 내용 : 성과 달성율, 인력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
- 점검 방법 : 표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사업부서에서 점검

## 나. 종합성과평가 추진 방안

-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민간위탁 사무가 공통적인 평가지표 없이 추진됨에 따라, 각 부서간 평가결과의 편차 발생으로 신뢰성·객관성 부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탁기관 성과를 종합적·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.
- 그러나,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비나 시설규모에 대한 제한 없이 매년 수탁기관에게 운영성과평가를 하도록 맡길 경우 수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,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 평가 방식은 ‘민간위탁’, ‘용역’, ‘서울연구원에 출연’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,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탁사무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며,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‘민간위탁’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 【참조】
-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‘민간위탁’ 방식은 동일 평가기관에 의해 3년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협약기간 내 부실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,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.

## 【 참조 】 평가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

### < 1안 : 민간위탁 >

- 동일 평가기관에 의해 3년간 평가 실시
- 안정적 평가 추진 가능하고 평가의 신뢰성 확보 가능
- 협약기간 내 부실 평가 등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발생 가능  
예시) 사회복지사업 평가(보건복지부,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3년)

### < 2안 : 용역 >

- 매년 새로운 평가기관 선정 후 평가 실시
- 부실 평가 등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매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 실시 가능
- 연 단위 평가기관 변경에 따라 평가의 연속성 및 신뢰성 저하  
예시) 책임운영기관 평가, 출연기관 평가 등

### < 3안 : 서울연구원 출연 >

- 서울연구원에 출연하여 고유사업으로 추진
-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분야(문화, 경제 등)에 대한 인재풀 및 인적네트워크 보유
- 민간위탁 조례상 종합성과평가는 서울시장의 사무로 되어 있어 출연기관의 고유 사무로 추진하는 것은 조례와 배치됨  
예시) 국고보조사업 평가(기획재정부, 조세재정연구원 출연)

- 또한, 매년 새로운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‘용역’ 방식은 부실 평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고, 매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매년 평가기관이 변경될 소지가 있어 평가의 연속성 및 신뢰성 저하될 우려도 있음.
- 종합성과평가에 대해서는, 서울시가 해당 사무에 대해 ‘담당직원 및 관련기관 간’ 측정 방식이 아닌 ‘외부 용역전문기관’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타당하다고 생각됨.

- 다만, 매년 ‘용역’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, 아니면 3년간 ‘민간위탁’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실정임.
- 한편, 일부에서는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민간위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추후 평가 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.
- 아울러,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('14.10.22 심의) 한 바 있고, 유사 사례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도 민간위탁방식 (수탁기관 :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위탁기간 3년)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의견임.

**「사회복지사업법」 평가 관련 규정**

**<사회복지사업법>**

**제43조의2(시설의 평가)**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·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<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>**

**제25조(권한의 위탁)**

④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·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·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·훈련업무
2.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

**<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>**

**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

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I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VII. 심사결과 : 「원안 가결」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10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운영체계를 종합적·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제도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서
- 나. 수탁기관 및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개요
- 위탁사무 :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
  - 평가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(종합성과평가)
  - 평가대상 : 연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
    -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
  - 평가주기 : 위탁기간 내 1회

## 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협약체결일로부터 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업무
  - 수탁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한 평가지표 마련
  - 사무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
  -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무별 현장 실사 실시
  - 사무별 사용자 만족도 실시(전화, 현장방문 등)
  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 등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종합성과평가 필요함
- 우리시 민간위탁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탁사무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 평가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종합성과평가)
  -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,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
  -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15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민간위탁관리팀 전종일(☎2133-6742)